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를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센터장을 센터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(안 제5조)
나. 기타 용어 정비 등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- 「여성농업인육성법」 제1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3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9772(2017.10.31.)]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주민복지과-63541(2017.11.24.)]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7.11.6. ~ 2017.11.27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를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센터장을 센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(센터종사자)를 개정하여 센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 자치입법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농촌보육·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, 센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